



그대의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정 보 공 개 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제20250141호]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5.01.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2.]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구멘 본점

대표번호 TEL



FAX 070-4647-4130

홈페이지 : com/minoo5008

이메일 : minoo5008@naver.com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P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7P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P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2P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P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5P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7P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0P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41P

※ 별첨서류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가맹본부용)

[별첨2] 별지 제2호 서식: 가맹금 예치 신청서 (가맹점사업자용)

[별첨3] 별지 제3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별첨4] 별지 제4호 서식: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제공 확인서

[별첨5] 별지 제5호 서식: 3년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구 멘	구멘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일	공동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7. 12. 20	2017.12.08	임민영/박소희	0507-1310-4130	070-4647-4130
	생년월일	1994.03.31. / 1994.10.20.		사업자등록번호	218-13-1766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공동 대표)	임민영/ 구멘	구멘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임민영외 1명	0507-1310-4130	070-4647-4130
사용인 (공동 대표)	박소희/ 구멘	구멘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임민영외 1명	0507-1310-4130	070-4647-413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 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구멘]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구 멘	그대의 한 그릇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상 호	구멘 00점	
상 표(1)		출원번호: 제40-2019-0081083호 등록번호: 제40-15987860000호
상 표(2)		출원번호: 등록번호 :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78,173	0	78,173	206,395	18,419	17,609
2023년	104,000	104,000	0	366,729	32,889	31,735
2024년	129,907	102,339	27,568	524,718	13,815	27,568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현 직위	사 업 경 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민영	공동대표	2017. 12~현재	구멘 공동대표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소희	공동대표	2024. 12~현재	구멘 공동대표	조리,제품개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	2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 신청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 일(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구멘 (상표권)	제43류 일본 음식점업 외 19건	2019.05.24.출원 2020.04.22.등록	출원번호: 40-2019-0081083 등록번호: 40-1598786-0000	임민영	2030.04.22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구멘] 가맹사업 현황

1. [구멘]을 시작한 날 : 2020년 04월 2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17년 12월 20일)

2. [구멘]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멘	구멘	임민영	2020. 04. 20. ~ 2025. 01. 31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4길 82-16(산척동)
구멘	구멘	임민영/박소희	2025. 02. 01. ~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14길 82-16(산척동)

3. [구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구멘	대분류
일식		일본라멘, 돈카츠, 마제소바, 규동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구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2	1	4	3	1	4	3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2	1	4	3	1	4	3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구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	0	0	0	0	2
2023	2	1	0	0	0	3
2024	3	0	0	0	0	3

6. [구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구멘] 가맹점 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	309,557	18,351	393,482	37,100	141,956	7,436	
서울	-	-	-	-	-	-	-	
부산	-	-	-	-	-	-	-	
대구	-	-	-	-	-	-	-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	기	재	생	략	-	-	
강원	-	-	-	-	-	-	-	
충북	-	-	-	-	-	-	-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이며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은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이라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8. [구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구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3개	1,16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 및 지역총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4년에 [구멘]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1]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비고
----	----	----	-------	----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251	 (비공개)	-	
광고	소계	 (비공개)	3,251	 (비공개)	-	
	 (비공개)	-	-	-	-	
	 (비공개)	 	 (비공개)	-	 (비공개)	
판촉	소계	-	-	-	-	
	 (비공개)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신갈금융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17	031-285-0231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계약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가맹금 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 ② 가맹본부가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등록 →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자동발송 →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은행 영업점에 접수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esc.wooribank.com)에서 가맹금 입금 확인 및 가맹금예치증서 발급 가능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刑)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구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철거공사, 도시가스시설, 냉난방 시설, 전기승압, 공조(덕트) 공사, 전면유리/샤시공사, 건물외부공사(갈바, 어닝, 자동문, 데크), 폴딩도어, 화장실 공사, 소방시설, 보안/CCTV, 음향시설, 컨셉외 시설, 인허가 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해당없음	-	-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 고
총계	-	-	-	
계약이행 보증금	해당 없음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계약 미이행, 원부자재 대금,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채무, 손해배상액 등과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 계	16,500
가맹비	11,000
교육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4~1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평수 : 66m²(20평)]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58,300~ 70,400				
주방설비/집기	자율선택	14,300~ 16,500	715~ 825	별도협의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설비/집기에 따라 상이
비품 외	자율선택	4,400~ 6,600	220~ 330	별도협의	상품 미공급 시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인테리어 (파사드/내외부)	자율선택	33,000~ 39,600	1,650~ 1,98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면적/구조에 따라 상이
LED간판 내부 사인물	자율선택	2,970~ 3,300	-			
최초 공급 물품 비용	협력업체	3,300~ 3,850	-	물품 입고 후 5일 이내	물품 미공급 시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30~ 550	-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소모품비,사은품, 홍보물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① 매장의 크기·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직접 시공 시 가맹본부의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철거공사, 도시가스 시설, 냉난방 시설, 전기승압, 공조(덕트)공사, 전면유리/샤시 공사, 건물외부공사(갈바,어닝,자동문,데크), 폴딩도어, 화장실 공사, 소방시설, 보안/CCTV, 음향시설, 컨셉 외 시설, 인허가 비용 등은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가맹점 입지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물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승인한 입지에 대해 당사에서는 매출이나 영업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합니다. · 가맹본부는 주 고객층, 주 고객특성, 유동 인구, 교통량, 상권/입지 규모, 배후지, 소비자 수준, 근린생활시설, 경쟁점포, 공공기관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 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을 원칙으로 함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을 원칙으로 함 · 향후 건강진단결과서 취득 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구멘]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당사는 가맹금에 대한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상표사용료	-	해당없음	-	-	-	-
리스료	-	해당없음	-	-	-	-
광고 분담금	광고회사	광고비의 50%	광고 실시 후 7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상품광고
	가맹본부	광고비의 25%	광고 실시 후 7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가맹본부	해당없음	광고 실시 후 7일 이내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전체 수수료의 50%	매월 정산 후 7일 이내	-	-	매월 말일 정산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 실시 10일 이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 필요 시 지급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영업지역 보장금	-	해당없음	-	-	-	-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자율선택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37페이지 참조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키오스크,POS,	가맹본부	협의	다음 월 5일	-	-	-

배달프로그램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0% 이내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대금지급 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 재고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하기 위한 추가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 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 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고 있는 [구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구멘]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 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 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구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구멘]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해당 없음	-	-
-	-	-	-	-
-	-	-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구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구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해당 없음	-	-	-	-	-
-	-	-	-	-	-	-
계					-	-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혼밥 정식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각 메뉴 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함
미소/탄탄/마제 혼밥정식			
돈코츠 라멘정식			
구멘 정식			
구멘(단품)			
미소라멘			
탄탄멘			
마제소바			
돈카츠/치즈돈카츠			
보통맛/매운맛 규동			
가츠동			
치킨가라아게/돈카츠 카레동			
치킨가라아게/돈카츠 야끼우동			
(혼밥) 야사이 야끼 라멘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카레우동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해지 	각 메뉴 별로 조합하여 판매 가능함
<세트메뉴> 새우&치즈볼, 새우&교자튀김, 새우&치킨가라아게,치킨가라아게			
<사이드> (야채튀김,치킨가라아게,공기밥,감 자고로케,콘치즈볼,타코야끼,새우 튀김,야끼교자,멘보샤,미니규동 등)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 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고객)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경쟁 업체	당사 또는 지정 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거래 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미성년자	주류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이미지의 통일성을 위해 판매되는 메뉴에 대한 가격을 정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매가격은 물가상승 등 경제 환경 및 사회환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혼밥 정식	17,500	가맹점사업자 대상 개발 앱, 카톡, SN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2024년 12월 기준
미소/탄탄/마제 혼밥정식	17,500		
돈코츠 라멘정식	14,500		
구멘 정식	12,500		
구멘(단품)	11,500		
미소라멘	12,500		
탄탄멘	12,500		
마제소바	12,500		
돈카츠/치즈돈카츠	12,500/14,000		
보통맛/매운맛 규동	12,500/13,500		
가츠동	12,500		
치킨가라아게/돈카츠 카레동	15,000		
치킨가라아게/돈카츠 야끼우동	16,000		
(혼밥) 야사이 야끼 라멘	20,000/14,000		
카레우동	12,500		
〈세트메뉴〉 새우&치즈볼, 새우&교자튀김, 새우&치킨가라아게,치킨가라아게	18,000		
〈사이드〉 (야채튀김,치킨가라아게,공기밥,감자 고로케,콘치즈볼,타코야끼,새우튀김, 야끼교자,멘보샤,미니규동 등)	1,500~6,500		

다만, 귀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일본라면, 돈카츠, 마제소바, 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구멘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 행정구역당 1점포 • 단, 특수상권(백화점, 할인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 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 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구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구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천원, %)

2024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온라인 판매 매출액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직영점)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직영점)
금액	928,670	552,900	-	-
비율	62.68%	37.32%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개, %)

2024년	오프라인 전용 상품 수	온라인 전용 상품 수	해당 영업표지 의 상품 수
상품 수	-	-	20개
비율	-	-	1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구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가맹 본부나 가맹사업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연장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 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 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법률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13조1항1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법13조1항2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법13조1항3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13조1항3
○ [구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13조1항3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13조1항3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계약서30조1항1
○ 가맹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 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서30조1항2
○ 가맹사업자가 정기납입 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계약서30조1항3
○ 가맹사업자가 품질관리기준을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계약서30조1항4
○ 가맹사업자가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계약서30조1항5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30조1항6
○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 제13조 제6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계약서30조1항7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30조1항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법률 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시행령15조1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시행령15조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령15조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시행령15조4항

즉시 계약 해지 사유	법률 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15조6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15조7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시행령15조8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시행령15조9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시행령15조10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점 영업에 따른 휴업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31조1항
○ 가맹점 영업에 관한 영업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31조4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 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 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 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 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 외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가맹점운영권의 제3자에 대한 대리 행사 또는 업무위탁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본부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 · 의무	본부에 서면 통보 → 본부승인 → 교육 수수료	교육수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불가	-	-	-
업무 위탁	불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지역 내에서 귀하가 [구멘]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 허가 절차	비고
「구멘」과 동일한 업종 (일본라멘, 돈카츠, 혼밥정식, 우동 등의 판매 및 배달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2)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 제한

당사는 [구멘]의 영업시간 및 영업 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시간	영업 일수	비고
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66㎡(20평)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 항목 확인 - 점포 점검 List 체크 -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구두 협의 	연간 3회 이내 (점주를 활용한 사전점검 포함)	본사 관리팀 (070-4647-4130)	
주방 관리				
품질 관리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구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 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증정 행사	증정 상품 출하가 50%	증정 상품 출하가 50%	"	"
	판촉물 등 제작	판촉물 제작 비용 50%	판촉물 제작 비용 50%	"	"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	"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제휴 행사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50%	(가맹점) 월 할인금액 제시→(가맹본부)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담액 송금	할인 서비스 등의 종료 시 까지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 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해 지 일	위약금(부가세 포함)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금이백이십만원(₩2,200,000)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220만원 X 잔여 개월 수/총계약 월수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 기간	소요비용
합 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접수 - 간단한 정보 제공 및 방문 요청	D-45	12p~13p 참조
사업설명·상담	- 사업 전반 설명 - 희망 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물건 방문/상권 확인 등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D-43~40	
가맹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계약 체결	D-29~26	
가맹금 예치	-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6(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5(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5~5(20일)	
주방설비, 집기비품, 초도물품 등 입고	- 주방설비, 각종 집기 및 비품, 초도 물품 등 입고	D-5(1일)	
교육 실시	- 음식 조리, 점포 운영 등 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p><분할지급 시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 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비	가맹점 오픈 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사은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 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등 차등 지원	오픈일	· 110만원 한도	
판촉 장려금	매월 가맹점 매입금액의 3% 이내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	직전 3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 가맹계약 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지원조건 미충족 시 지원하지 않음	가맹계약 기간	직전 3개월 평균 매입금액 기준 · 1000만원~ 2000만원: 매입금액의 2% · 2,000만원 초과시 : 매입금액의 3%	익월 상품 대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 마케팅,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 훈련, 재무, 회 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관리팀 (070-4647-413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구멘]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자금 알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매출 부진 경영지원	매출 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경영지원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월 5백만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 기간	경영진단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 제공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구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메뉴조리, 마케팅, 검수, 매장관리, 점포경영 등	실습/ 이론 교육	개점 전 교육 이수 수료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 홍보 및 마케팅, 노무, 재무, 점포경영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필요 시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구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 고
신규 교육	5일	5,500	필수교육(가맹비 등에 포함)
보수 교육	별도 계획	별도 책정	개발되는 과정에 따라 상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0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 칭	소재지
1	경기	구멘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 상기 구멘 산척점은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7년 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552,900천원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가맹희망자 인근의 가맹점사업자 현황

* 귀하가 장래에 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가맹점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제공일: 20 년 월 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4길 82-16(산척동)
구멘 공동대표 임민영, 박소희 (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